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,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되어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(안 제7조).
-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며,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함(안 제13조).
-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를 추가하고 2년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기존 세율의 50%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52조).
-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등으로 인상함(안 제103조의20).
-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(안 제119조의2).
-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 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(안 제142조 등).

-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, 액화천연가스(LNG)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을 부과함(안 제146조).

II. 검토의견

1.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따른 적용례 신설 필요

- 안 제142조제2항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143조 제2호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, 안 제144조는 해당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로 규정하며, 안 제146조는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고, 안 제147조 제7항은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, 개정안은 부칙에서 해당 납세의무 신설에 따른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데, 개정안 제52조제1항 단서¹⁾에서는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7조²⁾에 적용례를 두고 있는 점, 과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

1) 안 제52조(세율)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초(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)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.

2) 안 부칙 제7조(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시설세를 도입하면서 부칙의 적용례를 둔 점³⁾을 감안하면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도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,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부칙 제17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<신 설>	부 칙 제17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, 제144조제2호라목,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

3) 「지방세법」 부 칙 <법률 제10469호, 2011. 3. 29.>

제4조(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제1항제1호, 제143조제6호, 제144조제1호바목,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